

2022. 04. 25(월). 10:00
제2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< 안건명 >

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백선아 의원 등 4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에 따라 2022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 에코연합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환경혁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에코연합회 임원의 구성인원을 확대함 (안 제5조제2항)
 - 임원의 구성 : 15명 → 20명
- 나. 에코연합회 회장·부회장을 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(안 제5조제3항)
- 다. 에코연합회 임원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 (안 제5조제6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 결과(2022. 4. 19. ~ 4. 21.) : 의견없음
- 나. 현행조례 : 덧붙임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 에코 연합회 임원 구성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임원의 구성원을 확대하고자하며, 임원 구성 시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.
- 아울러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2022년 4월 22일

산업건설전문위원 이 명 구

□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환경혁신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혁신을 선도하는 시민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혁신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환경혁신 사업”이란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,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사업)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(폐아이스팩, 폐의류 재사용 등)
2.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
3. 환경혁신사업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
4. 타 시·도 우수사례 공유 및 환경혁신사업 확산 등을 위한 교류
5. 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남양주시 에코 연합회 구성) ① 시장은 환경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을 연합하여 남양주시 에코 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를 구성 할 수 있다.

②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제3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봉사 및 지원
2. 연합회 소속 단체 및 시민 간 협력 증진 및 정보교류

제5조(임원회의 구성) ① 시장은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 에코 연합회 임원회의(이하 “임원회의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

1. 회장 1명
2. 부회장 2명
3. 자문위원 2명

③ 회장은 연합회의 임원 중에 시장이 임명하고, 부회장은 임원 중에 호선한다.

④ 자문위원은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한다.

⑤ 자문위원을 제외한 임원은 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임원회의 운영) ① 임원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3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
2. 연합회의 조직·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
3.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7조(회의수당 등) 제6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또는 「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 등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환경혁신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연합회 회원 및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피복비, 활동수첩 등 소모품 구입
2. 생활폐기물 줄이기, 자원재활용 등에 필요한 행사, 워크숍, 교육
3. 환경혁신사업을 위한 홍보물품
4. 그 밖에 환경혁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제공의 대상 및 방법을 예산의 범위내로 정한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환경혁신 사업에 기여한 실적이 현저한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「남양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<조례 제1916호, 2021.12.2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